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생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489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:김생환, 권수정, 김기덕, 김정환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 서윤기, 송아량, 양민규, 이광성, 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교육기본법, 학교급식법,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, 전자정부법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"「학교급식법」"을"「학교급식법」 및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」"으로, "공급함"을 "공급하고,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 개함으로써"로, "향상"을 "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" 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학교급식의 정보공개)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2. 영양, 위생,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 ·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

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

- 4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
- 5.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
- 6. 학교급식의 질,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
- 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혖 행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 제1조(목적) ----- 「학교급 식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 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 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・②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 <신 설>

개 정 안

식법 및 「교육관련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. --------- 공급 하고,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--------- 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-----

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 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학교에서 보유 · 관리하는 급식 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0조(학교급식의 정보공개) 제3 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 • 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

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2. 영양, 위생,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- 3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 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
- 4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

 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

 간 식단표
- 5.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
- 6. 학교급식의 질, 학교급식 정 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 사 결과
- 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
<u>제11조</u>·<u>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제10조·제11조 (생 략)